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

1. 제정이유

- 2015. 1. 1.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필요양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함
(제1조, 제2조)

2015. 1. 1. 이후 확정된 민사·행정·특허 등의 본안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어 판결서가 공개되는 사건에 적용됨
(단, 위 조항이 제외하지 않는 판결서)

나.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사무관등이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함(제3조)

다. 변론공개금지사건이 열람 등 제한결정의 양식을 예시하고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도록 함(제4조)

라.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제도를 당사자 등 관계인

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, 제한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와 송달, 양식의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(제5조)

마.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의 대상의 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 양식을 제시함(제6조)

바.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양식을 예시하고,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제한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, 제163조제1항,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고,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함(제7조)

사.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서 양식을 예시함(제8조)

3.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

붙임과 같음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예규는 2015. 1. 1. 이후 확정된 민사·행정·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(다만, 2014. 12. 31. 이전에 확정되거나 「소액사건심판법」,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사건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비실명 처리) 민사·행정·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,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·법원사무관·법원주사·법원주사보(이하 “법원사무관등”이라 한다)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) ①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,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[전산양식 A2215]와 같다.

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안내)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

구 및 법정안내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 [전산양식 A2216-1]을 게시한다.

②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[전산양식 A2216]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.

③ 법 제210조에 따라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송달한다.

제6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) 법원사무관 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, 제한 후에는 “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”[전산양식 A2216-2]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.

제7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) 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[전산양식 A2215-1]과 같다.

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4항, 제163조제1항,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,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.

제8조(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)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[전산양식 A2217]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.

②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[전산양식 A2218]과 같고,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[전산양식 A2218-1]과 같다.

③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

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